

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

심의일시/장소	2021. 10. 14.(목) 14:00 /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(20층)		
사업명	광진구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(변경)		
신청위치	광진구 자양동 680-63번지 일대		
의결번호	(굴토)2021-15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굴토계획

-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,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[인·허가권자가 확인](#)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,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< 굴토분야 >

지반조사 및 보강분야

- 현황측량도 및 지장물 상세도를 작성하고, 인접건물 현황(지상/지하 층수)과 각 지장물명, 유관기관, 담당자, 연락처를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.

흙막이 가시설 분야

- 본 현장은 암반 발파가 대부분이므로 발파 굴착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시험발파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.
- 부지 좌측 상부 행복주택과 당 현장 흙막이 벽체 접촉구간에 대한 전개도 및 단면상세도를 추가하기 바람(평면도에 Key-Map을 표시하기 바람).
- 풍화토구간은 비탈면 경사를 1:1.5로 조정하기 바람.
- 비탈면 구간에 대한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.
- 흙막이 가시설 구조계산서의 띠장(Wale) 수평 및 수직 휨응력 검토에서 설계도면과 단면계수가 일치하도록 수정하기 바람.
- 띠장 단면구성이 2가지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, 구조검토 결과를 고려하면 동일한 단면(H300×200×9×14)으로 적용해도 무방해 보이므로 동일한 단면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.
- H-Pile 천공홀에 대한 되메움 재료 및 다짐 방법을 추가하기 바람.

계측관리 분야

- 가시설을 영구벽체로 활용할 경우 0.003H의 지중경사계 관리 기준치는 과대하여 슬라브의 파손이 우려됨에 따라, CWS공법 검토 시 적용된 슬라브의 허용변위를 관리 기준치로 사용하기 바람(※ CWS공법 관계자와 건축분야 관계자가 협의 후 해당내용을 명확히 하여 보완 후 본 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바람). (계속)

- 굴착 영향범위 밖이더라도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경사계와 균열 측정계, 진동 측정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□ 기타분야

- 변경의 핵심이 동시 시공에 의한 흠막이 변경임에 따라, 행복주택과 당 현장 접속부에 대한 시공순서 및 기초 타설을 포함한 되메우기 시 시공순서도를 작성하기 바람.
- 당 현장에 향후 착공 시 토질 및 기초기술사 1인 이상을 포함하는 3인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 지하층 완료시까지 기술자문을 수행하도록 도면/보고서 상에 명기하기 바람(단, 원설계자는 제외). 끝.

2/2

2021. 10. 14.
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